

서울특별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소영철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3313
----------	------

발의 년 월 일: 2025년 10월 20일
발의자: 소영철, 강석주, 고광민,
김경훈, 김규남, 김영철,
김용호, 김원태, 김재진,
김종길, 김태수, 김형재,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민병주, 서상열, 신복자,
유만희, 유정희, 이상욱,
이성배, 이종태, 이종환,
이희원, 임춘대, 최민규,
허훈, 홍국표 의원(29명)

1. 제안이유

- 그린바이오 산업은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 등을 적용하여 농업 생산성을 향상하고 신소재 개발 등으로 농업 관련 전·후방산업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기후위기에 효과적인 대응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린바이오 산업의 육성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고 산업의 기반이 취약하여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체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2024.1.2.).
- 이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고성장·고부가가치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본계획의 수립과 함께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촉진, 창업 지원 및 기업 육성, 우선구매 및 판로지원 등을 규정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 나. 시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안 제4조).
- 다. 실태조사 및 그린바이오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및 안 제6조).
- 라.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술개발 촉진 및 창업·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안 제8조).
- 마. 그린바이오제품 우선구매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관계법령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의 그린바이오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그린바이오”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그린바이오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그린바이오기업”이란 그린바이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법 제7조에 따라 신고한 기업을 말한다.
4. “그린바이오제품”이란 그린바이오를 활용하여 생산한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5. “그린바이오소재”란 그린바이오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그린바이오제품 개발 및 이용 촉진
3.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4. 그린바이오기업 지원 및 창업 활성화 방안
5. 그린바이오산업 전문인력 양성
6. 그린바이오제품의 우선구매 및 판로지원
7. 그 밖에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 ④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과 시행을 위해 그린바이오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 그린바이오산업에 관한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기술개발 촉진) ① 시장은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술 등을 신속하게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기업 및 창업 지원) 시장은 그린바이오기업의 육성과 창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
2. 창업을 위한 시설 및 공간 제공
3. 경영 상담 및 법률 컨설팅 지원
4. 제품 개발 및 실증사업 지원
5. 판로 개척 및 홍보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우선구매 및 판로지원)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그린바이오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그린바이오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그린바이오제품의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 및 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제10조(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원 등) 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그린바이오제품 및 그린바이오소재의 연구·개발·생산 등을 지원하기 위한 첨단시설의 설치
2. 그린바이오제품 및 그린바이오소재 등의 공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3. 그린바이오제품 및 그린바이오소재 원료의 계약재배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육성지구에 있거나 육성지구로 이전하는 그린바이오기업에 자금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연번	조·항	추계대상 여부	판단 내용
1	제3조(시장의 책무)	×	【규정단일 미영향】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를 강조한 규정으로 이에 따른 추가재정요1)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	【규정단일 미영향】 계획 수립은 통상 기존 내부인력, 정부·정책연구보고서 등을 활용하여 수립하기에 해당규정이 단독으로 발생시키는 비용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3	제5조(실태조사)	○	【유사사례 토대 자체추계】 실태조사 비용이 발생하나, 서울시 관련부서 문의결과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유사사례를 토대로 자체추계함 ⇒ 총 20,000천원 소요예상(추계기간 내 1회 실시가정)
4	제6조(전문인력 양성)	△	【정책적 구체화 필요】 그린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촉진, 창업지원, 판로지원, 육성지구 지원 등에 관한 비용이 발생하나 정책적으로 구체화된 바 없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2) 추계가 곤란함
5	제7조(기술개발 촉진)		
6	제8조(기업 및 창업 지원)		
7	제9조(우선구매 및 판로 지원)		
8	제10조(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원 등)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 실태조사 실시비용(안 제5조)

나. 전제

- (실태조사) 1회 20,000천원(P) / 기본계획 수립주기를 고려하여 5년(T) 주기 실시 가정
- (발생기간) 2026년부터 비용 발생, 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발생
- (미 고려) 물가상승률 등 미반영

다. 추계기간 : 시행일로부터 5년(2026년~2030년)

- 1) [노력의무규정 특성] 시장의 책무규정은 통상 선언적 조항(가령 “~노력하여야 한다” 등)으로 조문 단독으로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 제외함
- 2) [지역별 특화로 인한 추계곤란] 그린바이오산업은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 등을 적용, 농업 및 전·후방산업 전반에 대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각 지역별로 주어진 여건이 상이하여 해당산업 추진방향 또한 특화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타 자지체 그린바이오산업 사례를 준용하기에는 추계 합리성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라. 방법

- (자체추계) 타 지자체 유사 실태조사 사례 등을 토대로 자체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비용 = 총 20,000천원(추계기간 내 1회 실시 가정)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지출	○ 실태조사 실시비용(안 제5조)	20,000	-	-	-	-	20,000
	소계(a)	20,000	-	-	-	-	20,000
수입	-	-	-	-	-	-	-
	소계(b)	-	-	-	-	-	-
□ 총 비용(a-b)		20,000	-	-	-	-	20,000

4. 덧붙이는 의견

- (추계액 성격) 예시적·제안적 금액

- 입법취지 및 서울시 관련부서 문의결과 해당 안은 선제적 입법³⁾이므로 구체적 정책수단, 집행 계획 등이 정해진 바 없어 타 지자체 유사사례 및 각종 자료 등을 토대로 재정분석과에서 정책 추진 형태를 임의로 가정하여 자체추계하였음

- (추계액 활용유의) 대략적 규모파악용 자료로 활용권장

- 향후 집행기관에 의해 해당 정책이 보다 구체화 될 경우 조사내용, 규모 등(다양한 지출결정요인)에 따라 소요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추계액은 다양한 실태조사 방식 중 하나의 예시로써 대략적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참고] 추계 가능성 및 재정소요 영향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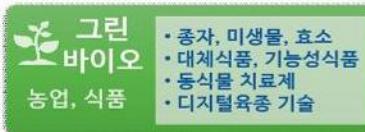
- 그린바이오산업⁴⁾ 관련 비용을 추정하려면, 우선 서울시의 그린바이오산업 여건⁵⁾을 분석하고, 해당 산업분야⁶⁾의 정책수요와 서울시의 재정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집행기관의 정책 방향 결정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3) [예산마련 추가논의 필요] 실질적인 정책변화를 이끌어내는 능동적 입법조치이나, 관련 예산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추후 구체적인 정책수단 결정 및 이를 실현할 예산 마련에 관한 보다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바이오산업 개념안내] 바이오 산업은 아래와 같이 분류됨

《 참고: 바이오 산업의 개념 및 범위 》

- 바이오 산업은 레드(의약)·그린(농업·식품)·화이트(산업)로 분류됨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5) [각종 연구자료 고려]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정책연구보고서(p.56) <지역별 그린바이오 사업체 현황>에 따르면 전국 총 12,803개 중 서울소재 사업체는 1,883개소인 것으로 파악됨

※ 참고자료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조성 방안 연구 최종보고서』(농림축산식품부, 2024. 11.)

6) [정부설정 분야 고려] 국가차원에서 그린바이오 6대 분야(종자, 동물용의약품, 미생물, 곤충, 천연물 유래 소재, 식품소재 등)를 분류후 각 분야별 산업거점을 설정하여 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이에 서울시도 향후 해당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 설정 분야를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5.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 선희
추계세제팀장 김 중현
추계분석관 손제승
☎ 02-2180-7953
e-mail : smclt22@seoul.go.kr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실태조사 실시비용(안 제5조)

2. 세부추계내역

가. 총비용 = **총 20,000천원**(추계기간 내 1회 실시 가정)

나. 연평균 총 소요비용 = 20,000천원⁷⁾

$$\begin{aligned} &= \text{실시단가}(P) \times \text{실시횟수}(T) \\ &= 20,000\text{천원} \times 1\text{회} \end{aligned}$$

7) [설시규모에 따라 소요비용 변동가능성 유의] 그린바이오산업 동향 및 국내 여건 분석, 충북 그린바이오산업 여건 분석, 충청북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조성 및 육성 전략 등이 포함된 『충청북도 그린바이오산업 특성화분야 연구용역』(19,800,000원 소요)과 본 조례안이 규정하고자 하는 실태조사와의 유사가능성을 고려하여 준용하였으나 그린바이오 신사업육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경북형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육성 연구용역』은 98,600,000원이 소요되었다는 점에서 조사내용에 따라 실태조사 소요비용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에 향후 안 제6조~제10조를 근거로 한 사업 추진 내용에 따라 해당 조사 또한 규모 및 실시비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금액은 대략적인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